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노사관계부)
Cal/OSHA(캘리포니아/직업 안전 보건 관리국)

Christine Baker, Director(노사관계부 국장)
Juliann Sum, Cal/OSHA Chief(Cal/OSHA 최고책임자)

보건 및 안전 관련 권리: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을 위한 사실 정보

2015년 6월



사진 제공: Bob Gumpert

“Cal/OSHA”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직업 보건 안전 관리국은 귀하의 직장 내 안전과 양호한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실 정보 자료를 읽으시고 귀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귀하의 작업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고용주가 제공하는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귀하의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효과적인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시행해야 하고 귀하의 고용주로 하여금 귀하 및 귀하의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IIPP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건 및 안전 상의 위험요소들을 인지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러한 위험요소 발견 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위험요소들을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Cal/OSHA에 의한 업무 집행

귀하에게는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관해서 Cal/OSH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al/OSHA는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요구 조건들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로 한 경우, 귀하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Cal/OSHA는 귀하의 이름을 비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귀하의 직장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Cal/OSHA 지역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에게 해당되는 지역 사무소를 찾으려면 다음 옵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온라인에 접속해 [instructions for filing a complaint\(민원 제기를 위한 지침\)](#)을 따라갑니다. 또는 www.dir.ca.gov/dosh의 [Cal/OSH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ile a workplace safety complaint(작업장 안전 관련 민원 제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 [Cal/OSHA 지역 사무소들과 그 사무소들이 담당하는 카운티가 표시된 지도](#)를 찾아 확인합니다. 또는 www.dir.ca.gov/dosh의 [Cal/OSH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ocations - Enforcement offices(집행 사무소 - 위치)"로 링크하고 다시 "map of the Cal/OSHA Enforcement regional and district offices(Cal/OSHA 집행 지역구 및 지역 사무소 지도)"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 1-866-924-9757번으로 전화하여 "2"라고 말하거나 "2"를 누르고 Cal/OSHA에 연결된 후에 귀하의 작업장 소재지의 우편번호를 말하거나 입력합니다.

지역 사무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 Cal/OSHA에 연락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Cal/OSHA가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우편 주소와 다를 경우 작업장 소재지 주소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작업장 내의 위험요소가 위치한 장소. 예: "12번 방에 있는 테이블 틈."
-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 또는 상태가 발생하는 시점. 예: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세척 시 이 용제를 사용합니다."
-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귀하가 그러한 위험요소에 관한 법적 요건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단지 문제에 대해서만 진술하면 됩니다. 예: "지게차 브레이크 불량" 또는 "낙상 보호 장치 없음."

조사

Cal/OSHA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민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때때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은 Cal/OSHA가 그러한 민원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위험요소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Cal/OSHA가 작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Cal/OSHA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 조사관은 사전 통지 없이 도착합니다.

- 도착 시, 조사관은 고용주 및 노조(노조가 있는 경우)와 함께 조사 전 시작 회의를 갖고 점검의 목적과 점검 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조사관은 해당 작업장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돌아보고 위험요소들 관찰하고 종업원들 및 감독자들을 인터뷰하고 서면 기록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 치수를 측정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종업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사관과 함께 그러한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는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으로 조사관과 인터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Cal/OSHA 조사관은 필요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귀하는 귀하의 직장이 아닌 곳으로 부터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조사관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특히 첫 번째 방문 시에 만나지 못했던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현장을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점검 후:

그러한 점검 중에 Cal/OSHA가 수집하는 정보를 통해 귀하의 고용주가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개 이상의 위반 통지서(citation)가 고용주에게 발부될 것입니다. Cal/OSHA는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에게만 그러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만약 귀하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귀하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Cal/OSHA는 귀하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고용주는 그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위반 사항을 "경감"시키거나 시정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후 15일 이내에 귀하는 항소 절차를 통해서 경감 기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위반 통지서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항소 건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경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그러한 항소 절차에 본인을 당사자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시킴으로서 고용주가 제기하는 항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Cal/OSHA가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고용주는 그러한 통지서의 사본, 해당 위험요소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기된 모든 항소 서류의 사본을 작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Cal/OSHA에 연락하여 위반 통지서를 포함하여 점검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위험요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귀하에게는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을 귀하가 거부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귀하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Cal/OSHA 보건 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해당 위반 사항이 귀하 또는 귀하의 동료에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위험요소"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귀하는 해당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거부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귀하의 상사 감독관에게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말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해당 위험요소가 시정되거나 또는 안전한 다른 작업을 배정받을 경우 귀하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귀하가 믿기에 보건 또는 안전 규정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 해당되는 경우 귀하의 직장 노조 대표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Cal/OSHA에 전화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고용주의 보복으로 부터의 보호

또한 귀하가 위험요소에 관해서 고용주에게 보고를 하거나 Cal/OSHA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고 보건 상태가 양호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고용주가 귀하를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강등시키거나 정직시키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고용주가 귀하를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경우에, 귀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조정관실(California Labor Commissioner)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 노동조정관실은 또한 노동기준 집행과(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라고도 불립니다. 노동조정관실은 고용주가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되찾아주고 귀하가 복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보복행위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a listing of Labor Commissioner offices\(노동조정관실 사무소 목록\)](#)을 찾아 확인하여 귀하의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www.dir.ca.gov/dlse의 Labor Commissioner's home page([노동조정관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ontact Us(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전화를 사용하려면 1-866-924-9757로 전화한 후에 "1"이라고 말하거나 "1"을 누르고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노동기준 집행과)에 연결된 다음 귀하의 우편번호를 말하거나 입력하십시오.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

귀하는 귀하의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에 관한 서면 정보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출 기록 및 의료 기록: 귀하는 본인 자신이 독성 물질 및 유해한 물리적 매개체(agent)에 노출된 것 뿐 아니라 유사한 작업을 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노출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에 접근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서면 요청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노출 기록에는 작업장 환경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 및 안전 데이터 시트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해당 기록의 대상자이거나 또는 귀하가 그러한 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얻으면 귀하는 해당 의료 기록에 접근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의료 설문지 및 이력, 검진 결과, 의료적 견해 및 진단, 치료 및 처방에 대한 설명, 응급 조치 보고 그리고 종업원들의 의료 관련 민원이 포함됩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 안전 데이터 시트에는 귀하의 작업장에 있는 유해성 화학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데이터 시트를 종업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귀하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데이터 시트에 즉시 접근하여 보는 데에 장애가 없는 한 전자 방식 접근도 허락됩니다.

직업 관련 상해 또는 질병 기록: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 관련 상해 및 질병 일지(양식 300); 작업 관련 상해 및 질병의 연례 요약 기록(양식 300A); 그리고 귀하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설명하는 상해 및 질병 사고 보고서(양식 301). 대부분의 업계에서 고용주는 다음 업무일 종료 시까지 그러한 사본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계획서: 귀하에게는 위험요소에 관한 의사소통, 호흡기능 보호 그리고 허가를 요하는 밀폐 공간 출입 절차와 같은 일정한 Cal/OSHA 의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귀하의 고용주가 수립한 서면 계획을 살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제공: Bob Gumpert

Cal/OSHA 정보

귀하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dir.ca.gov/dost의 [Cal/OSHA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1-866-924-9757로 전화하여 "2"라고 말하거나 "2"를 누르고 Cal/OSHA로 연결된 후에 귀하의 우편번호를 말하거나 입력하면 귀하의 직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Cal/OSHA 지역 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고용주의 요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모든 고용주는 Cal/OSHA의 종업원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규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IIPP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들 각각에 있어서 고용주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명시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이름 및 직책.
- **규정 준수:** 안전하고 보건 상태가 양호한 작업 관행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문서화된 시스템.
- **의사소통:** 안전 및 보건 사항에 관해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시스템. 이러한 형태에는 회의, 훈련, 계사물,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리고 노사 안전 보건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종업원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고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종업원들과 보건 및 안전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사 위원회를 이용하는 고용주는 IIPP 규정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위험요소 평가:** 정기적인 점검을 비롯하여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들.

- **사고 또는 노출 관련 조사:** 직업 관련 상해 및 질병 조사를 위한 절차.
- **위험요소 시정:** 안전하지 않거나 보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적시에 시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 **훈련 및 교육:** 종업원들에게 일반적인 안전 작업 관행 그리고 배정된 각각의 작업에 특정된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종업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 **기록 관리:** IIPP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취하는 조치를 문서화.

IIPP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8권 3203조\(title 8, section 3203\)](#)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는 [www.dir.ca.gov](#)의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노사관계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Laws & Regulation(법령 및 규정)”으로 링크하고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Title 8(캘리포니아 규정집 - 8권)”로 다시 링크 그리고 “Cal/ OSHA”로 다시 링크하여 “3203”을 검색하십시오.

[고용주가 효과적인 IIPP 를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Cal/OSHA의 교육 도구들을](#) 활용하십시오. 또는 [www.dir.ca.gov/dosh](#)의 [Cal/OSH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Educational Materials(교육 자료)” 제목 하의 “Consultation eTools(교육 도구 전자 상담)”로 링크하십시오. 또한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title 8, section 3203이 게시된 웹페이지 상단의 IIPP모델로 연결되는 링크들을 참조하십시오.

사진 제공: Bob Gumpert



귀하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에게는 안전하고 보건상태가 양호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희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아니며 귀하에게 귀하의 이민 신분을 요청하거나 귀하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